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. 2. 3 선고 2014가단717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1. 20.

판결 선고 2015. 2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132㎡와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17㎡에 설치된 조립식판넬지붕 가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,
나. 2012. 2. 26.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정재우

별지